

# 2026 한복 해외 패션위크 진출 지원 브랜드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해외 패션위크 연계를 통해 한복 디자인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한복 디자이너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참여 브랜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 한복 분야 해외거점 프로모션
- (사업목적) 해외 주요 패션위크 행사 연계를 통한 한복 디자인 우수성 홍보 및 한복 디자이너 해외 진출 기회 확대
- (사업기간) 2026.1.1.~12.
- (행사기간) 2026년 9월 예정('27 SS 패션위크 기간)
- (행사장소) 파리 · 뉴욕 · 밀라노 · 런던 중 1개 도시 (예정)  
※ 행사 개최 도시는 현지 여건, 예산 및 운영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
- (행사내용) 해외 4대 패션위크 중 1개 도시와 연계하여 한복 브랜드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프로모션 및 세일즈 프로그램 운영  
※ PT쇼, 쇼룸, 수주회, 팝업, 바이어 미팅 등 현지 여건에 따른 복합 구성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 공모 개요

- (공모명) 2026 한복 해외 패션위크 진출 지원 브랜드 공모
- (접수기간) 2026. 3. 30.(월) ~ 4. 26.(일) 24:00까지, 총 28일간
- (수행기간) 협약체결 ~ 2026년 12월
- (공모대상) 해외 시장 진출 역량과 콘텐츠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한복 디자이너 브랜드 \*세부 요건은 하단의 신청자격 확인 필수
- (선정규모) 총 5개 브랜드 내외
- (지원금) 브랜드당 최대 3,000만 원

## □ 공모 세부요강

### ○ (신청자격)

구분	주요 내용
필수 요건	① 대한민국 국적의 한복 디자이너 브랜드 ※ 디자이너가 해당 브랜드의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상 등재되어 있을 것
	② 최근 3년('23~'25년) 내 2개 시즌 이상의 신규 컬렉션 발표 실적 보유 ※ 룩북, 온라인 공개(공식 홈페이지·SNS 등), 패션쇼·전시, 행사 참여 등 외부 공개된 형태의 신규 의상 제작 또는 컬렉션 발표, 행사 참여 실적을 기준으로 함.
	③ 최근 2년('24~'25년) 중 1개년도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상인 브랜드 ※ (증빙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수출실적명세서 중 택 1 필수 제출 ※ (참고사항) 증빙서류상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조건에 미달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④ 공고일(26.3.30.) 기준 사업자등록 후 만 3년 이상 영업 중인 브랜드
우대 사항	최근 3년('23~'25년) 내 해외 진출 실적 보유 브랜드 (총점 범위 내 최대 5점 가점) ※ 해외 전시, 패션쇼, 쇼룸, 팝업, 수주, 협업 프로젝트, 판매, 납품, 바이어 상담, 공공행사, 문화행사 참여 등 해외 시장 진출 또는 활동 실적 증빙 필수

#### 【제외 대상】

- 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브랜드
- ②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브랜드
- ③ 동일·유사 내용으로 타 정부 지원 수혜 브랜드
- ④ 휴·폐업 상태 브랜드
- ⑤ 의류가 아닌 잡화만 제작하는 브랜드
- ⑥ 지원사업 수행 후 발생한 반납대상액 체납 브랜드
-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에 따라 보조사업 사업 배제, 보조금 교부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브랜드

### ○ (지원내용) 해외 패션위크 연계 세일즈 기반 해외 진출 지원

구분	주요 내용
공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 공간: 해외 패션위크 연계 팝업·쇼룸·수주회 공간 대관 및 기본 구조물 설치</li> <li>- 물류 지원: 브랜드별 공동 일괄 운송 (브랜드당 기본 박스 수 한정)</li> <li>- 바이어 매칭: 현지 바이어 네트워킹 및 상담 지원, 전문 통역 인력 공통 배치</li> <li>- 통합 홍보: 행사장 공동 사인물, 홍보물 제작, 현지 사진·영상 촬영</li> </ul> ※ 종합운영대행 용역 범위 내에서 대행사 일괄 집행

<b>브랜드 개별 지원금</b>	<p>▶ <b>브랜드당 최대 3,000만 원 이내 (e-나라도움 교부)</b></p> <p><b>주요 사용 가능 항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샘플 제작비:</b> 해외 진출용 신규 컬렉션 샘플 제작비(원·부자재비, 봉제비 등 최소 수량 한정)</li> <li>- <b>콘텐츠 제작:</b> 본 행사를 위한 영문 룩북, 라인시트, 브로슈어 등 바이어 대상 자료 제작, 제품 홍보용 사진·영상 등 콘텐츠 제작비,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li> <li>- <b>운송 보완:</b> 행사물품 추가 운송 비용(공통 운송 물량 초과분)</li> <li>- <b>국외 출장 항공료:</b>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 실비 (최대 300만 원 한도)</li> <li>- <b>회계검사수수료</b>(필수 편성)</li> <li>- <b>기타:</b> 개별 부스 등 장소/장비 임차료(참가비, 입점비), 전문가 활용비, 전문인력의 용역비, 현지 세일즈 관련 직접 경비, 모델·바이어 대응 비용 등</li> </ul> <p><b>집행 불가 항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장 체류비 (숙박·식비 등 개인 경비 일체) → 전액 자부담</li> <li>- 유형 자산 취득비 (가구, IT기기 등)</li> <li>- 대표자 및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 운영성 경비</li> <li>- 본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브랜드 개별 단독 활동에는 집행 불가</li> </ul> <p>※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VAT)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 사업비 외 자부담으로 처리</p>
	<p>※ 세부 사용 범위는 향후 사업 운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p> <p>※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일부 비용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p>

## □ 신청 안내

- (접수기간) 2026. 3. 30.(월) ~ 4. 26.(일) 24:00까지, 총 28일간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hanbok.global@kcdf.kr](mailto:hanbok.global@kcdf.kr))
  - 메일 제목: 2026 한복 해외 패션위크 진출 지원\_브랜드명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알림소식-사업공모) 「2026 한복 해외 패션위크 진출 지원 브랜드 공모」 공고문 내 지정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비고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지정 양식 (hwp, PDF)
2	참가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3	지원사업 참여동의 및 협약서	
4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5		<b>지원금 수혜내역</b>	
6		<b>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b>	
7		<b>포트폴리오</b> ※ 디자이너 프로파일, 브랜드 소개, 룩북·컬렉션 이미지, 제품군 라인시트 (시즌명·가격 포함), PR·판매 실적 포함	자유 양식 (PPT)
8		<b>컬렉션 발표 실적 증빙 (최근 3년 내 2시즌 이상)</b> ※ 룩북, 온라인 공개(공식 홈페이지·SNS 등), 패션쇼·전시·행사 참여 등 외부 공개된 형태의 신규 의상 제작 또는 컬렉션 발표 실적 제출 ※ 다만, 위와 같은 형식의 실적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한복상점 참여, 라인시트, 포트폴리오, 쇼룸·트레이드쇼 참여, 판매 및 계약 실적, 협업 프로젝트, 납품 실적, 컬렉션 관련 언론·미디어 보도자료 등 신규 의상 개발 및 외부 공개 또는 유통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자료 제출 시 심사를 통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증빙서류
9		<b>매출 증빙 서류 (최근 2년 중 1개년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b>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수출실적증명원,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중 택 1	
10		<b>사업자등록증명</b> ※ 공고일 이후 국세청 발급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불가)	
11		<b>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b>	
12		<b>(법인사업자)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b> <b>(개인사업자) 대표자 개인 납부 증명서</b>	
13		<b>(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b> <b>(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b>	
14	<b>선택</b>	<b>해외 진출 경험 증빙서류 (최근 3년 내 경험)</b> ※ 해외 전시, 패션쇼, 쇼룸, 팝업, 수주, 협업 프로젝트, 판매, 납품, 바이어 상담, 공공행사, 문화행사 참여 등 해외 시장 진출 또는 활동 실적 증빙 필수 ※ (증빙서류) 해외 전시·행사 참가 확인 자료, 계약서, 거래 내역, 납품 또는 판매 실적, 협업 및 프로젝트 수행 자료, 홍보·보도자료, 공식 홈페이지·SNS 게시물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증빙서류

○ (제출방식)

- 파일명: 2026 한복 해외 패션위크 진출 지원\_브랜드명.ZIP
- 파일형식: 한글(hwp) 양식 작성 서류는 한글파일과 PDF로 모두 구비하되, 그 외 서류와 함께 1개 파일로 압축 제출
- 주의사항: 미제출 서류 관련 별도 보완 안내 없으며, 서류 미비 또는 접수기한 초과 제출 시 결격 처리

## □ 선정 절차

- (선정 방식) 1차 서류심사 후 발표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2차 발표심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선정 포기 발생 시 차순위 후보에게 기회 부여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 규모가 선정 규모의 2배수 미만일 경우 1차·2차 심사를 통합 운영할 수 있음  
 ※ 심사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최저점 제외 후 산술 평균  
 ※ 각 단계 평균 점수 70점 미만 시 탈락

- (심사위원) 외부 전문가 5인 내외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최종 선정 규모의 1.5 ~ 2배수 내외 선정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브랜드 및 디자인 경쟁력	브랜드 아이덴티티 및 디자인 완성도, 최근 컬렉션의 독창성·상품성	20
시장 적합성	상품 구성의 체계성, 가격대·라인 구성의 해외 시장 적합성	25
세일즈 및 수출 가능성	과거 수주 실적, 바이어 대응 경험, 해외 진출 성과 및 확장 가능성	20
생산·납기 및 사업 수행 역량	생산 인프라, 오더 대응 체계, 납기 관리 가능성, 조직 운영 안정성	20
재무 안정성	최근 매출 규모 및 사업 지속 가능성	15
<b>합 계</b>		<b>100</b>

※ 해외 패션쇼, 수주회, 쇼룸 등 공식 해외 진출 실적(최근 3년) 확인 시 총점 범위 내 최대 5점 가점

※ 제출서류 적격 여부 및 평가항목 기준에 따른 정량·정성 평가

- 2차 발표심사: 대면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최종 선정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세일즈 및 마케팅 전략	타겟 바이어 설정의 명확성, 가격 및 유통 전략, 수주 목표 및 실행 계획의 구체성	30
제품 경쟁력 및 시장 대응력	시즌 라인 구성, 상품 포트폴리오 체계성, 현지 시장 및 트렌드 대응 전략	20
생산·납기 및 운영 대응 역량	생산 대응 체계, 납기 관리 계획, 현장 운영 계획의 현실성	20
기대성과 및 성장 가능성	수주·판매 성과 창출 가능성 및 향후 시장 유지·확장 가능성	20

사업 이해도 및 적합성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도,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수행 의지	10
합 계		100

※ 브랜드당 약 15분 (발표 10분 + 질의응답 5분)

※ 발표자는 대표자 원칙, 부득이한 경우 사전 협의 후 대리 발표 가능

※ 1차 서류심사 통과 브랜드는 2차 심사 전 발표자료 사전 제출 필수

### ○ (세부일정)



※ 일정은 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단계별로 개별 안내

## □ 선정 의무 및 협약사항

### ○ (의무사항)

- 지원금 활용 예산계획서에 따라 예산 집행
-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금 교부, 집행, 정산 등 사업 수행 절차 준수

업무절차 : 최종선정 → e나라도움 회원가입 → 자격검증 → 사업등록 → 교부신청 → 집행등록 → 성과 및 정산 관리(~11월) → 정보고시  
(세부내용: [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 참조)

- 집행 내역 및 증빙 자료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e-나라도움)에 수시 등록
- e-나라도움 행정 담당 1인 필수 지정 및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교육(보조사업자) 수료증 제출 필수(선정 후 1개월 이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본 사업 매뉴얼 등 주요 원칙 및 가이드 준수
- 사업의 진행과정과 예산 집행내역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세히 정리하여 중간/결과/정산 보고 진행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집행정산, 정산·실적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필수
- 주관기관이 진행하는 회의, 행사, 교육, 평가, 만족도 조사, 홍보물 제작 등에 협조 및 결과보고서·실적자료 등 사업 수행 관련 자료 제출 필수

### ○ (협약 체결)

- 최종 선정된 브랜드는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 협약 체결 불가 사유

- 가. 정해진 기한 내 협약서 미제출
- 나. 협약기한 이내 협약 관련 필요 서류 미제출
- 다. 신청 서류 허위 작성 제출
- 라. 검토 결과 신청 제외 대상 사실 발견

### - 협약 해제 및 사업비 환수 사유

- 가.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 나.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간 내에 정한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 수행 포기
- 라.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 마.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부터 사업중단 또는 지원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 바.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사.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 아. 당초 신청 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자.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및 부처 지원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
- 차. 관련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카. 협약 및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타. 그 밖에 객관적인 사유로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해당 사유에 대해 소명 기회를 부여함)

## □ 유의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 마감 시간까지 도착한 내용만 인정하며, 우편·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지정된 신청 양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양식 외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허위 기재, 기재 착오,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 후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 공모 일정, 행사 일정 및 지원 내용은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관처에서 운영하는 2026년 기준 지원금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사실을 주관처와 공유하고 동일 내용에 해당할 경우, 지원사업을 택일하여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 사업비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과도한 보조금 책정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관련 비용은 신청 브랜드가 부담합니다.
- 주관기관 관계자에게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이 확인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작된 결과물은 사업 홍보 및 성과 확산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계획서 내용 및 예산은 주관기관의 검토를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

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위 각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 (선정 후 유의사항)

- 해외거점(도시)은 파리·뉴욕·밀라노·런던 중 1개 도시로 최종 확정 예정이며, 선정 브랜드는 확정된 개최 도시 및 행사 운영 계획에 따라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으로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보조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6 한복 해외거점 프로모션 사업 운영 안내서」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총 2회에 나누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 : 70%, 2차 : 30%)
- 거래·상담·수주·매출 실적, 현장 사진, 홍보물, 고객 및 바이어 정보 등 주요 실적자료를 주관기관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작된 콘텐츠, 사진, 영상, 홍보물 등의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홍보·기록·사업성과 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예방 관련 법령에 따라 서약서 제출 및 관련 교육 이수 등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정된 행사 일정 및 운영계획에 따라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또는 중도 포기할 경우 향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업체는 주관처의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당한 요청 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하거나 허위 사실 제출, 관련 법령 또는 협약사항 위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 집행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또는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연관된 금전적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교부금의 반납 또는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검토를 통해 사업 및 예산 계획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승인된 사업 및 예산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 중이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선정 업체에 있습니다.
- 선정 후 사업 규모가 초기 제안 대비 현저히 축소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보조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재해, 감염병 등으로 행사가 취소·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기타 공고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적시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해석에 따릅니다.

## □ 문의처

###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한복기반팀

- 전화 02-398-1621 / 이메일 hanbok.global@kcdf.kr
- 문의 가능 시간: 평일 10:00~16:00

※ 점심시간(12~13시), 주말, 공휴일 제외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조치'에 근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예산 편성 기준 안내**

사업 예산	브랜드당 국고지원금 <u>30백만 원 이내</u>
정산 방법	<u>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및 정산</u> - 집행방법(증빙) : 보조금 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인건비 집행 * 정산 시 집행 증빙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예산 집행계획 작성 시 항목은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 국외여비 5개 세목으로 작성하되, 물량, 단가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예산비목별로 상세히 작성(아래 표 참고)
- 과세(일반·간이) 사업자는 부가세 지원 불가 - 공급가액 기준으로 예산 계획 수립, 부가가치세는 브랜드 자체 부담 (국고보조금으로 부가세 편성·집행 불가, 향후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 사업 선정 이전에 집행한 금액은 사업비로 인정 불가
- 사업예산서 내 사업예산과 지출예산의 총금액 일치 필수
- 모든 집행은 각 예산 항목별로 지정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전자적 형태가 아닌 증빙서류(수기 영수증, 수기 세금계산서 등) 제출 시 집행 불가, 추후 불인정될 수 있음
- 예산계획 재조정 필요 시(비목·세목·산출근거 변동) 반드시 주관기관에 사전 고지 후 승인 필수(승인 없이 변경·집행한 예산은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해외 집행 시 계약서·인보이스·해외송금증·환율 적용 기준 등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예산 계획 작성 기준 환율 : USD 1\$=1,500원 / EUR 1€=1,700원)
- 세무 산출·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은 집행 불가
- 단가 기준: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내규 준용
- 관련 법규 준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최신 개정안 숙지 필수

※ 사업예산 편성 필수 항목

☑ 회계검사수수료를 사업 예산 내 포함하여 편성해야 함

※ 사업예산 편성 불가 항목(지원금 사용 불가)

- ☑ 인건비·복리후생비, 출장 체류비(숙박·식비 등 개인 경비 일체)
- ☑ 물품구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사업 진행시 발생하는 각종 관세 및 수수료
- ☑ 사업추진비(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등)
- ☑ 자산취득비/자본적 경비(가구, 전자기기 등 자산으로 남는 물품과 건축, 시설 축조 등 장기간으로 남는 모든 관련 비용)
- ☑ 경상적 경비(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공과금 등 단체운영과 관련된 비용)
- ☑ 본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브랜드 개별 단독 활동에는 집행 불가
- ☑ 세부 산출/결과가 불명확한 비용 집행 불가

▶ 지원금 사용 가능 범주

목	세목	구분	용도 (산정기준 및 단가)	집행방법	지출 증빙 방법	
운 영 비 비 (20)	일 반 수 용 비 (01)	※300만원 초과시 계약 진행 필수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지원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지원과제와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계좌이체 or 카드사용	○전문가활용비 ①위촉계약서 ②성폭력/성희롱방지서약서 ③개인정보동의서 ④이력서 ⑤활동결과보고서(활동기간 명시) ⑥이체확인증(인건비,원천세) ⑦원천징수영수증 및 납부영수증  ○계좌이체 시 ①견적서(거래명세서) ②계약서(계약사항 시) ③세금계산서 ④이체확인증 ⑤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⑥결과보고서(물품검수조서) ⑦예산 항목별 필요 서류  ○카드거래 시 ①견적서(거래명세서) ②계약서(계약사항 시) ③카드매출전표 ④결과보고서(물품검수조서) ⑤예산 항목별 필요 서류  <300만원 초과 계약시> + 비교견적서
		전문가 활용비	•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b>개인과 계약</b> 을 통해 대행하는 비용 • 패턴사, 봉제사, 모델, 사진작가, 현지 통역사 등 프리랜서 활용 • 각종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및 전문가 활용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통역료/번역료 및 감수료 ※ 결과물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 인정 불가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 단가 적용 ( <a href="http://www.hufscit.com">http://www.hufscit.com</a> ) ※ 외국어→외국어로 번역 등 위 기준 준용 어려운 경우 전문 업체 대행의뢰 사례 및 시장가격 비교검토 등의 방법으로 단가 책정 * 본 사업과 관련된 상품 제작/광고·홍보 비용, 전문가 비용만 인정 * 위촉계약서/활동결과보고서 내 계약기간, 활동내용, 계약금액 등 상세 기재			
		안내· 홍보물 제작비	• 책자(룩북), 전단(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제품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산출내역상 인쇄물/홍보물의 금액(수량 및 단가)이 포함되도록 작성			
		수수료 및 사용료	• 해외 패션 행사 참가 수수료(부스), 쇼룸 입점 수수료 • 컬렉션 현지 이동을 위한 ATA 가르네 대행 비용, 수하물 비용			
		보관 및 운송비	• 참여기업의 제품 및 각종 물품의 보관 운송료, 물품 운송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등 우편 이외의 수단을 이용한 운송료 * 행사물품 추가 운송 비용(공통 운송 물량 초과분) * 본 사업과 관련된 보관 및 운송료에 한함			
		광고료 및 광고료	• TV, 인터넷, 라디오, 신문, 기타간행물, SNS 등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한 매체 광고료 * 산출내역상 광고물의 금액(수량 및 단가)이 포함되도록 작성			
		회계검사 수수료	※ <b>사업비에 편성 필수</b> • 전체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 수수료 •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 (VAT 포함) - (사업비 3천만 원 기준) 수수료 336,000원×1식			
		임 차 료	※300만원 초과시 계약 진행 필수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지원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07)	○ 지원과제와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해외 행사 장소 운영을 위한 집기 임차, 시설 대관 등에 한함 * 산출내역서상 임차료(대상물품 규모/기간/단가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품목을 “XX외” 등으로 모호하게 기재하지 말 것 ※ 품목별 수량, 단가, 금액을 정확히 기재할 것 ※ 합계 금액을 정확히 기재할 것 ※ 이동을 위한 차량 임차, 사무실 임차료 지원 불가		
	대여비 및 설치비	• 사업수행을 위한 일시적인 장소 대관 및 필요 물품(장비 등) 대여비 등 • 제품홍보, 판매 등을 위한 장치 혹은 부스설계 및 전시 디자인 설치물 대여 및 설치 경비 등	
재 료 비 (11)	*300만원 초과시 계약 진행 필수 <b>&lt; 산정 및 정산 기준 &gt;</b> ○ 지원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지원과제와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상품 개발 재료비	• 각종 재료비(원단, 부속품 등),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 공기구비품비로 구분) * 최소 수량 한정	
일 반 용 역 비 (14)	<b>&lt; 산정 및 정산 기준 &gt;</b> ○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b>업체와 용역계약</b> 을 통해 대행하는 비용 ※ 2천만원 초과 용역비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을 통한 계약 필수(수의 계약 불가능) ※ 품목을 “XX외” 등으로 모호하게 기재하지 말 것 ※ 품목별 수량, 단가, 금액을 정확히 기재할 것 ※ 합계 금액을 정확히 기재할 것 ※ 단순 재위탁 형태의 과도한 외주 집행은 제한될 수 있음 ※ 총 지원금의 70% 이상 편성 불가(홍보 영역은 총 예산의 40% 이하로 책정) ※ 결과물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 인정 불가		계좌이체  <b>&lt;필수&gt;</b> ①계약서 (수행계획 포함) ②견적서 ③세금계산서 ④이체확인증 ⑤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⑥결과보고서  <b>&lt;300만원 초과 계약시&gt;</b> + 비교견적서
	용역비	• 전문성이 필요한 임가공, 행사 운영, 유통 업무 등에 대한 용역계약 비용 • 샘플 제작 • 제품 홍보 및 설명, 판매를 위한 동영상 제작, 기존영상 편집비 등 • 제품 PPL을 위한 방송 및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비용(영상 편집비, 작가료, 연출료, 출연료) 등	
여 외 비 (20) (02)	국 외 항공료	• 개최지 in/out 직항 원칙, 불가 시 필수 경유편 가능 •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 실비 - 예: 서울-파리 왕복 2,000,000원×1명 ※ 개인 목적의 경유/출·도착지 변경 불가 ※ 사업 예산의 10% 이하(3백만 원) 책정	계좌이체 or 카드사용  ①지출결의서 ②거래명세서(견적서) ③사업비카드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④이체확인증 ⑤항공권, 예매내역 등

▶ 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구분	내용
유흥업종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맥주홀, 칵테일 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 요정, 한 국식 접객주점, 서양식 접객주점, 무도 유흥주점, 극장식 주점(식당)
기타주점업소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 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등